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357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한패스㈜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◦「외국환거래법」상 ‘기타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의 업무범위 위반’으로 과징금 2,195,009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기 관

◦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제3항제3호,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5조의5,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39조에 따르면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*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등록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·추심 및 수령업무를 하여야 하나,

*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

- 한패스㈜는 xxxx.xx.xx.~xx.xx. 중 종교단체의 해외 선교자금(총 O건, □□달러)을 지급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사전에 등록한 내용*을 위반하였음

* 해외 선교자금 지급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-45조에 따라 기타 자본거래에 해당되어, 동규정 제2-39조에 따른 사전에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범위를 벗어남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◦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 제3항, 제12조(인가의 취소 등) 제1항, 제18조(자본거래의 신고 등) 제1항

◦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5조의5(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)

◦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39조(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) 제1항